

## DoSPOT(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 규약

(목적)

제 1 조 본 DoSPOT 이용 규약(이하 '본 규약')은 NTT MEDIASUPPLY CO., LTD.(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Wi-Fi 서비스 'DoSPOT'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이용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

제 2 조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 (1) '본 서비스'란 당사와 점포 등 사업자(이하 '대상 점포 등 사업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점포 등(이하 '대상 점포 등')을 방문하는 자에게 당사 Wi-Fi 로 인터넷 이용환경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 (2) '이용자'란 대상 점포 등을 내방하는 자 중,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이용자 단말기'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기(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그 내부에 기록된 데이터 일체를 포함).
- (4) '당사 설치 설비'란 본 서비스를 위해 당사가 설치한 전기적 설비(당사가 제삼자에서 조달한 것을 포함하여, 또 설치 장소도 대상 점포 외도 포함한다)
- (5) '무선 AP'란 당사 설치 설비에 포함된 라우터를 말하며, 무선 접속 이용자 인증 기능에 대응한다.
- (6) '이용자 인증'이란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자 본인의 메일 주소 혹은 SNS 정보(이하 '인증정보')를 무선 AP 에 송신하여 이용을 위한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 (7) '무선인증설비'란 당사 설치 설비에 포함된 이용자 인증을 위한 설비를 말한다.
- (8) '대상 점포 등 사업자 설비'란 대상 점포 등의 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 설비(통신회선로 제외)를 말한다.
- (9) '대상구역'이란 무선 AP 의 전파가 도달하는 범위에서 본 서비스로 통신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10) '지역 오너'란 본 서비스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Wi-Fi 구역 확대를 위해 보급을 추진하는 지자체 및 관련 단체, 상업시설 관리회사 등을 말한다.
- (11) '협력사업자'란 당사와 제휴하여 본 서비스의 판매촉진, 조사, 관련 서비스 개발 등을 공동으로 검토하는 사업자 또는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이용 무료)

제 3 조 이용자는 본 규약에 동의한 후 이용자 인증이 완료되면 본 규약에

따라 대상 구역에서 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 및 횟수는 이용 시 이용자 인증 화면 또는 대상 점포 등에서 제시한다.
3. 이용자는 본 서비스 및 대상 점포 등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대상 점포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본 규약의 변경 및 적용)

제 4 조 당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본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 시점에 제시된 본 규약의 최신 버전을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2. 이용자는 이용자 인증 화면에 있는 링크를 통해 본 규약의 최신 버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 중지)

제 5 조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1) 당사 설치 설비 및 기타 당사 전기통신 설비에 대하여 보수 및 공사가 필요할 경우.
  - (2) 제 10 조(통신 이용 제한)에 따라 통신 이용을 중지할 경우.
  - (3) 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 (4) 본 서비스에 관하여 제삼자로부터 당사에 대한 클레임 또는 청구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2. 전 항의 규정 이외에 대상 점포 등의 휴일, 영업시간 외 등, 대상 점포 등 사업자의 사정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용 정지)

제 6 조 당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6 개월을 이내의 당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본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 (1) 제 12 조 (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당사가 인정한 경우.
- (2) 전호 외에도 본 규약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이며 본 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업무수행 또는 당사의 무선 인증 설비 및 무선 AP에 대하여 현저한 지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용자 인증)

제 7 조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이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통신 조건)

제 8 조 본 서비스와 관련된 통신 프로토콜은 IEEE802.11b, IEEE802.11g, IEEE802.11a, IEEE802.11n 및 일부 무선 AP 기종에서 IEEE802.11ac에 준거한다. 단, 이 통신 프로토콜과 관련된 이론 상의 전송 속도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2. 본 서비스는 IPv6 통신에는 대응하지 않는다.

(무선구간 암호화)

제 9 조 본 서비스에서 무선구간 암호화는 실시하지 않는다.

(통신 이용 제한)

제 10 조 당사는 천재지변 및 그 외의 비상사태 발생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해 예방과 구원, 교통, 통신 및 전력공급 확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통신 지원 및 공공 이익을 위해 긴급한 사항에 대한 통신을 우선으로 통신하기 위해, 별기 1(통신의 우선적 취급과 관련되는 기관 명)에 기재되어 있는 기관의 무선 LAN 기기(당사가 각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기에 한함) 이외의 기기로 인한 통신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될 경우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 (1) 통신이 현저하게 혼잡했을 경우.
  - (2) 당사가 미리 설정한 수를 넘은 복수의 통신이 동시에 실행되었을 경우.
3. 당사는 이용자가 일정 시간 통신하지 않을 경우 접속을 중단할 경우가 있다.
4. 특정 대상 구역에서는 전송 속도가 특별 제한이 설정될 경우가 있다.
5. 본 서비스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사이트 등의 접속을 제한(필터링 등) 하는 경우가 있다.

(면책)

제 11 조 당사는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등에 대하여 그 안전성, 정확성, 확실성, 유용성, 기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한 정보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2. 이용자 단말기 또는 대상 점포 등 사업자 설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도 전 항과 동일하게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3.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 변경, 이용 중지 및 폐지, 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취득하는 정보 등의 유출 및 소실,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 및 제삼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금지 사항)

제 12 조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 타인의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 저작권, 의장권, 상표등록 등), 사생활, 초상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2) 타인을 비방하여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및 그럴 우려가 있는 행위.
- (3) (사기, 업무방해 등의) 범죄행위 또는 이것을 유발 혹은 선동하는 행위.
- (4) 아동 성 매매, 예금/저금 계좌 및 휴대 전화의 불법매매 등의 범죄와 관련된 행위, 또는 관련될 우려가 있는 행위.
- (5) 음란, 아동 포르노 혹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사진 혹은 문서 등을 송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 (6) 약물범죄, 규제약물 등의 남용과 관련된 행위, 또는 관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미 승인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
- (7) 대출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대출 접수하는 행위.
- (8) 무한연쇄강(다단계판매) 개설 또는 이것을 권유하는 행위.
- (9) 본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조작 또는 삭제하는 행위.
- (10)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위장하기 위해서 메일 헤더 등의 부분을 조작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11) 유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송신 및 게재하거나, 타인이 수신 가능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12)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해 상업적 선전 또는 권유하는 전자 메일을 영업구역에서 송신하는 행위.
- (13) 타인이 혐오감을 느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전자메일을 본인의 동의 없이 대상 구역에서 송신하는 행위.
- (14) 당사 혹은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혹은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15) 고의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보류한 채 방치해 기타 통신의 전송 교환을 방해하는 행위.
- (16) 불법 도박을 실시하거나, 또는 불법 도박에 대한 참가를 권유하는 행위.
- (17) 불법행위(권총 등의 양도, 폭발물의 불법제조, 아동포르노 제공, 공문서 위조, 살인 또는 협박 등을 말한다. 이하 이 란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으로 한다)를 하청 또는 증개하거나, 유인(타인에게 의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는 행위.

- (18) 사람의 살해 현장의 사진 등의 잔학한 정보, 동물 살상 혹은 학대하는 사진 등의 정보, 그 외 사회 통념상 다른 사람에게 현저히 혐오감을 안게 하는 정보를 송신하는 행위.
- (19) 성적 표현, 폭력적 표현, 만남 사이트, 그 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정보를 송신하는 행위.
- (20) 사람을 자살로 유인 또는 권유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높은 자살 수단 등을 소개하는 행위.
- (21) 그 행위가 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유인하는 내용을 링크하는 행위.
- (22) 범죄나 불법행위로 유인하거나, 그 우려가 높은 정보, 제삼자를 부당하게 비방 중상 또는 모욕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삼자를 통해 게재하는 것을 유인하는 행위.
- (23)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
- (24) 보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회선 또는 서버 등의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 (25) 그 외, 공서양속에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고 당사가 판단한 행위.

(이용자 단말기 등의 관리)

제 13 조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단말기를 준비한다.

2. 본 서비스가 공중무선 LAN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는 이용자 단말기의 보안 대책을 실시하는 등, 자기 비용과 책임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인증 정보를 본인 책임하에 관리한다.
4. 이용자 단말기 또는 인증 정보를 관리하지 않아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삼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공중무선 LAN 서비스 이용의 위험성)

제 14 조 본 서비스는 공중무선 LAN 서비스인 만큼 고객 이외의 제삼자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삼자가 악의적 또는 고의적으로 전파를 수신하여 ID 나 비밀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 메일 내용 등의 통신 내용을 부정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히 중요한 통신은 고객의 비용과 책임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

제 15 조 당사는 본 규약의 규정된 내용 이외에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취급 관련 방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정하여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2. 이용자는 본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다음의 개인 정보를 당사가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취득 및 이용할 것에 동의한다.  
 <취득 개인 정보>  
 인증정보, 접속 일시, 회수, IP 주소, 단말기 정보”  
 <이용 목적>  
 (1) 본 서비스의 제공, 악용 방지 및 보안 유지 등의 보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개선  
 (2) 무선 AP 와 관련된 설치, 접속 수요 조사 또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3. 취득된 개인 정보는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통계 데이터로 가공한 후, 전 항의 목적을 위해 대상 점포 등 사업자 및 DoSPOT(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 규약의 별기 3(구역 오너 & 협력사업자)에 기재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4. 개인정보는 본 규약에 동의한 후, 무선 AP 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취득된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취득되지 않는다.

(준거법)

제 16 조 본 규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에 대하여는 일본 법에 준거하는 것으로 한다.

별기

별기 1. 통신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기관 명

통신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기관 명은 아래와 같다.

기상 기관, 수방 기관, 소방 기관, 재해구조 기관, 질서유지에 직접 관계되는 기관, 방위에 직접 관계되는 기관, 수송 확보에 직접 관계되는 기관, 통신역무 제공에 직접 관계되는 기관, 전력 공급 확보에 직접 관계되는 기관, 수도 공급 확보에 직접 관계되는 기관, 가스 공급 확보에 직접 관계되는 기관, 선거관리 기관, 별기 2 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문사 등의 기관, 예금/저금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관

별기 2. 신문사 등의 기준

1. 신문사 아래 기준을 모두 갖춘 일간 신문지를 발행하는 신문사
  - (1) 정치, 경제, 문화 그 외 공공적인 사항을 보도 또는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널리 판매되어 있을 것.
  - (2) 발행 부수가 1 의 표제에 대하여 8,000 부 이상일 것.
2. 방송 사업자 전과법(1950 년 법률 제 131 호)에 따라 방송국의 면허를 받은 자
3. 통신사 신문사 또는 방송 사업자에게 뉴스(1 의 기준을 모두 것을 갖춘 일간 신문지에 게재하거나, 방송 사업자가 방송하기 위해 뉴스 또는 정보(광고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통신사

별기 3 구역 오너 및 협력사업자

구역 오너 및 협력사업자에 관해서는 별지 기재하여 수시로 갱신한다.

부칙

2012년 9월 20일 제정

2016년 3월 16일 최종 개정

이상.